2016년도 제53회 세무사 2차 국가자격시험

교 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수험번호	성 명	향후 일정안내
3교시	세법학1부	90분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A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건설시행사로서 2010 사업연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도시개발구역의 아파트단지 3,000세대를 신축·분양하고,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에 따라 관련 수익·비용 등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왔다. 그러나 이 중 1,000세대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를 하지 않음에 따라 A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지체되었고, 이에 채권단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A법인의 분양계약해제를 추진하였다. A법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민사법원에 분양계약해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위 1,00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채권단은 2014년 12월 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자 A법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 초과납부된 세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B에게 경정 및 환급을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위 사례에서의 분양계약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위 사례에서 관할 세무서장 B가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관련 손익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모두 거부한다면 이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청렴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관련 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3.2.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2.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2.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3.2.15.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2.2.2. 신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A법인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甲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2년 6월 23일 거주자 乙에게 A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대금 20억 원, 대금지급기일은 2012년 9월 23일로 약정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인 2012년 6월 23일 A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거주자 丙에게 동업 정산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2012년 9월 23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지급기일인 2012년 9월 23일까지 丙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약 2013년 9월 23일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丙에게 乙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12년 9월 23일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丙에게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3년 9월 23일까지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甲은 2014년 10월 15일 乙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丙은 2015년 6월 1일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물음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위 사례에서 丙이 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위 사례에서 甲이 丙에게 乙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丙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와 그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를 설명하시오. (15점)

청년韓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A협동조합중앙회(이하 'A중앙회')는 지역별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업부문을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영·관리,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상호금융사업은 회원조합이 예치한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익사업 부문이다.

2. A중앙회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 중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지역 회원조합들에게 365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이하 '365 코너')의 설치비(이하 '이 사건 설치비') 50억 원을 상호금융사업의 자금을 동원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거래') 전산장비지원대출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A중앙회의 회계자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에서는 '상호금융사업에서 보조성격의 무이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A중앙회의 수익창출에는 기여하나, 그 비용을 자금예치조합의 기대수익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수익사업인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자부담원칙이 훼손되어 회원조합 간 갈등과 중앙회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3.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중앙회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① 이 사건 설치비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설치비 상당의 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것, ② 이 사건 대여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무상의 금전 대여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여거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것 등 두 가지 경정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2016년 5월 경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위 A중앙회의 2008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 신고·납부세액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것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A중앙회에 송달하였고, A중앙회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쟁송을 제기하였다. (단, A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세법상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이 아니며, 세법상 가산세는 이하에서 논외로 한다.)

[물음 1] A중앙회가 영리법인이 아님에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와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A중앙회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위 사례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2점)

【문제 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거주자 甲의 가족으로는 자녀 乙(1982년생)과 丙(1985년생), 그리고 홀어머니 丁이 있으며, 배우자는 10년 전에 사망하였다. 甲·乙·丙은 무주택 상태로 지내다 2003년 3월 1일 부천아파트를 甲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乙의 군복무기간(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을 제외하고는 부천아파트에서 계속하여 함께 동거하였다. 甲은 2014년 丙에게 강화토지를 증여한 후 2016년 3월 1일 사망하였는데, 甲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부천아파트와 김포토지, 인천상가가 있었다. 甲은 사망 전 인천상가는 丁에게 유증하고, 부천아파트는 乙에게, 김포토지는 丙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유언하였다. 상속이 개시되자 乙은 상속을 승인하였으나, 丙은 상속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자신의 개인채무과다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상속인들은 2016년 5월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乙, 丙, 丁은 모두 거주자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은 15억 원이다.)

[물음 1]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의의 및 요건을 설명하고, 위 사례에서의 적용여부를 논하시오. (10점)

[물음 2] 위 사례에서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공제한도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